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531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12.경 B와 공모하여, C빌라 D호에 관하여 E을 임대인으로 하고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청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함).

나. 경찰은 2019. 12. 5. 원고를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의 혐의사실로 체포하면서 별도의 영장 없이 원고로부터 지폐 6,1650만 원(1만원권 지폐 5,100장, 5만원권 지폐 310장, 이하 ‘이 사건 지폐’라 함) 등을 압수하였다. 검사는 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경찰에서 이 사건 지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임의로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서류가 작성되어 있다.

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0.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지폐에 관하여 환부·몰수 등을 선고하지 않았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폐에 대한 환부 등의 처분이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해 그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지폐는 원고가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계속 보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의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나. 이 사건 지폐에 관하여는 환부·물수가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출자인 원고에게 환부해 줄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지폐 6,650만 원 중 6,150만 원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위 6,150만 원을 환부받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위 6,150만 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폐 6,650만 원 중 500만 원이 원고가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위 500만 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